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432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19년 2월 1일

○ 회 부 일 : 2019년 2월 7일

2. 제안이유

○ 위례신도시는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송파-성남-하남에 걸쳐있어 교통, 쓰레기 수거, 주민편익시설(도서관, 문화시설 등) 중복 설치 등 생활불편 사항 다수 발생함.

○ 위례신도시 관련 민원은 '18.10월 기준 427,974건으로 '17년 4,297건 대비 약 100배 증가로(국무회의시 위례신도시 민원현황 보고, '18.12.11, 권익위) 중앙부처 및 관련 지자체 간 민원 해결을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이 필요함.

3. 주요내용

가. 협의회 구성

○ 명 칭 :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 위 원 : 서울특별시, 경기도,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 특별위원 : 행안부, 국토부, 권익위, 한국토지주택공사

○ 회　　장 :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순으로 윤번제(2년 단위)

※ (간사) 회장 지자체 소속 행정협의회 담당 부서장

【 회장 지자체 역할 】

- **(회의 소집)**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자체 장이 요구할 경우
- **(회의 운영)** 협의회 안건을 관계 지자체 장에게 미리 배포, 회의록 작성
- **(회의 보고)**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 상황을 행안부장관에게 보고

○ 회의운영 :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

※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

○ 운영체계 : 분야별 실무협의회에서 사전 검토 후 행정협의회에서 결정

나. 행정협의회 사무

○ 재원의 분담 및 투입 등 행정협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 광역 대중교통 사무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도서관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사항

○ 공론조사 등을 통한 주민 참여 보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경기도,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간 위례신도시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목적으로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에 가입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위례신도시 택지개발 개요

○ **면　　적**: 6.753㎢ (송파 38%, 성남 41.3%, 하남 20.7%)

※ 송파 2.571㎢ / 성남 2.787㎢ / 하남 1.395㎢

○ **주택계획**: 45,257호(송파 16,513호)

○ **인 구 수**(사업완료시): 111,044명(송파 42,495명)

※ ’18. 9월말 기준 위례동 인구수 : 송파 28,738, 성남 43,591, 하남 19,112

○ **사업기간**: ’08. 8월 ~ ’20. 12월

○ **시 행 자**: LH(75%), 서울도시주택공사(25%)

※ 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지방자치법」 제152조)되어 있는 바, 행정협의회로서의 지위를 얻기 위한 것임.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나. 행정협의회 구성 배경 및 필요성

○ 위례신도시는 하나의 생활권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서울시(송파구), 경기도(성남시, 하남시)〕이 상이하여 교통, 쓰레기수거, 주민편익시설 중복 설치 등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위례신도시 월별 민원 접수 현황(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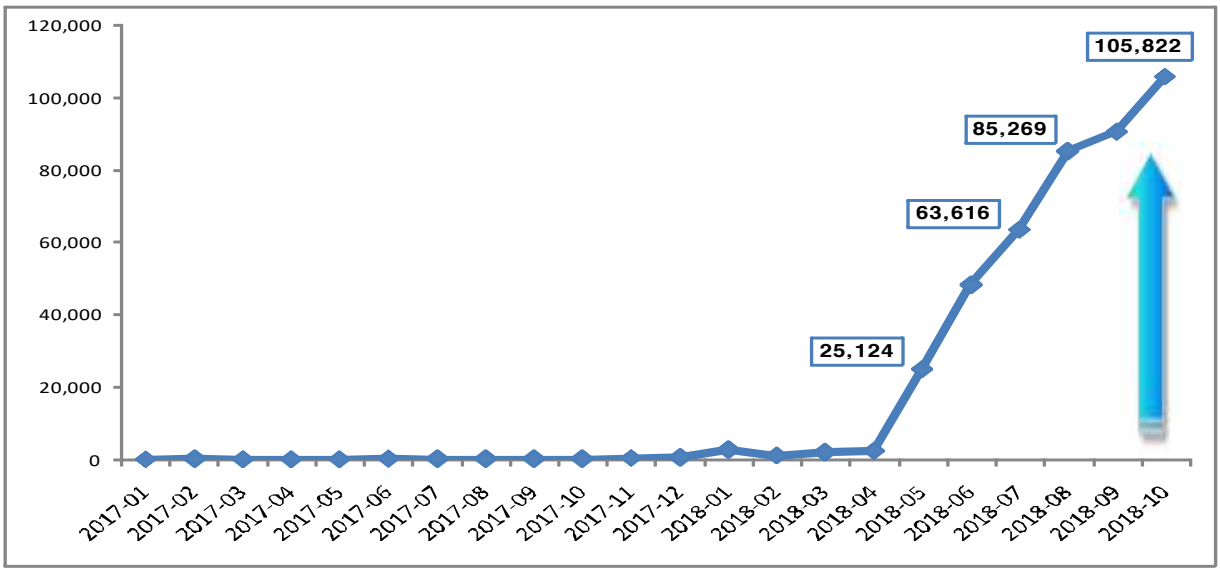

※ 위례신도시 관련 민원은 2018년 10월 기준 427,974건으로 2017년 4,297건 대비 약100배 급증함.

○ 도시, 주택, 편의시설 등에 해당업무가 분산되어 있고 총괄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행정협의회 구성을 통해 분야별 불편사항을 연계·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만들고, 주민복지향상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행정협의회는 법인격이 없는 자치단체간 협의기구라는 점에서 합의사항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바, 사실상 형식적이고 제한적인 활동에 머무는 한계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여부와 내실있고 실절적인 활동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다. 행정협의회 조직과 효율성

○ 행정협의회의 조직은 일반위원(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과 특별위원(행안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 구성(제3조 및 제4조)으로 구성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공동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는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중앙부처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과 협업체계를 만들려는 것으로 보이나, 중앙부처는 행정협의회의 협의사항에 관한 의결권 없는 자문역할만으로 국한되는 한계가 있음.

○ 또한, 행정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관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무리한 외연 확대로 인한 조직의 비대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복잡한 협의절차 진행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한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경기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이 윤번제(2년 단위)로 회장직을 수행하고, 위원은 5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송파구청장, 하남시장, 성남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위원(행안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경우에는 관계 직원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바, 특별위원의 관계 직원을 누구로 규정할 것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협의회 구성의 위상과 자문 및 의견 수렴 등에 효과적인 구성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행정협의회의 경비부담 및 분담금

○ 행정협의회 조직 구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협의회의 운영과 각종 회의 등을 위해 회비 및 분담금 등을 납부(제12조 및 제13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비용으로써 납부의 필요성과 명분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행정협의회에 경비부담과 회비 및 분담금이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경비부담 규모를 정하지 않고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는 바, 부담하여야 하는 예산의 규모를 알 수 없는 백지수표식 예산지출계획으로 예산의 의무부담 규모를 알 수 없다는 점과 의회의 예산 통제권을 벗어난 자의적인 주먹구구식 졸속예산집행으로 예산 낭비의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경비부담과 회비 및 분담금 지출계획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운영세칙을 수립하는 등 예산 지출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 마련도 요망된다고 하겠음.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법조사관	김 정 덕